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20050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1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19가합59361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의 순번 1 내지 23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1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피고는, ‘별지 표의 순번 16 내지 20 송금내역(이하 ‘쟁점 송금내역’이라 한다)은 피고가 사위로부터 3회에 걸쳐 2017. 7. 27. 33,214,353원, 2018. 1. 29. 31,749,647원, 2018. 3. 13. 21,187,639원을 각 차용하였고, C가 위 각 금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피고와 C의 관계, 쟁점 송금내역에 기재된 각 금원(이하 ‘쟁점 금원들’이라 한다)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과정, 쟁점 금원들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주장 내용 및 그 주장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쟁점 금원들의 사용권한 및 그 종국적 귀속에 관한 약정 등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사위로부터 쟁점 금원들을 차용하였고, 이를 C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또한, 피고는 ‘별지 표의 순번 21, 22 송금내역인 25,000,000원과 5,000,000원은 피고가 피고의 임차인인 L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합계 113,000,000원은 C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의 “원고들 비롯한” 부분을 “원고를 비롯한”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채동수, 판사 박혜선, 판사 임영우

별지

표

순번	출금은행	지점명	출금계좌번호	송금일	송금액	비고
1	I은행	죽전보정	(계좌번호 1 생략)	2015. 3. 9.	4,000,000	갑 3-1, 2
2				2015. 3. 23.	2,300,000	갑 3-4
3					2,000,000	갑 3-4
4	J은행	죽전역		2015. 3. 11.	20,000,000	갑 3-3
5						
6	K은행	죽전중앙	(계좌번호 2 생략)	2015. 4. 27.	69,000,000	갑 4-1,2
7				2015. 6. 15.	5,000,000	갑 5-1 ~ 5-5
8					61,700,000	
9					12,800,000	
10	K은행	죽전중앙	현금	2015. 7. 16.	1,100,000	갑6
11	I은행	죽전보정	(계좌번호 1 생략)	2016. 5. 20.	6,000,000	갑 7-1,2
12	K은행	죽전중앙	(계좌번호 3 생략). 현금	2017. 2. 2.	1,000,000	갑 8
13	K은행	죽전중앙	현금	2017. 3. 14.	3,850,000	갑 9
14	K은행	죽전중앙	(계좌번호 2 생략)	2017. 5. 29.	3,700,000	갑 10-1,2
15	K은행	죽전중앙	현금	2017. 5. 29.	500,000	갑 10-2
16	K은행	죽전중앙	(계좌번호 2 생략)	2017. 7. 27.	32,000,000	갑 11
17				2018. 1. 29.	25,000,000	갑 12-1
18					5,000,000	갑 12-1,2
19					1,000,000	갑 12-1,3
20				2018. 3. 13.	20,000,000	갑 13-1
21				2018. 3. 19.	25,000,000	갑 13-1,2, 갑 5-5

22				2018. 4. 25.	5,000,000	갑 5-5
23	K은행	죽전중앙	현금	2018. 5. 21.	1,000,000	갑 14
합계					311,950,000	

끝.

